

수원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3687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8. 6. 19.자 84,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산하 동수원세무서장은 B의 아래 표 ‘세목명’란 기재 세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기한, 고지세액을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그 중 아래 양도소득세는 B이 2018. 2. 12. 화성시 C 외 9필지 토지를 매도(이하 ‘10필지 토지 매매’라고 한다)하고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되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2018. 2. 28.에 성립된 것인데, B의 자진신고 및 분할납부신청에 따라 2회로 분납하여 결정·고지되었다.

세목명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17. 11. 30.	4,570,000	6,804,520
201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17. 12. 15.	994,650	1,024,470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18. 6. 30.	179,045,920	251,559,320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18. 8. 31.	177,047,500	244,502,330
합계		361,658,070	503,890,640

나. 한편 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8. 6. 19. 84,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시점 기준으로 A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증여한 위 현금과 화성시 D 도로 2,934㎡ 중 192분의 80 지분이 있었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5,966,250원(= 2018년 공시지가 78,500원 × 2,934㎡ × 80/19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합계 179,966,250원(= 84,000,000원 + 95,966,250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 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를 넘는 합계 361,658,07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바 채무초과상태였고, A은 위 적극재산 중 현금 84,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A과는 분리된 세대에서 각자 생활하였으며 자산관리나 처분 역시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A의 조세채무 등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A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A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그런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돈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